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50호 2023. 8. 24.(목)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823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1
○ 사천시 규칙 제82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	3
○ 사천시 규칙 제82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 사천시 규칙 제826호	사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16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450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18
----------------	--------------------------------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3-20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45
○ 사천시 고시 제2023-205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46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152호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입법예고-----	48
○ 사천시 공고 제2023-1159호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59
○ 사천시 공고 제2023-1160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1
○ 사천시 공고 제2023-1165호	도로명 부여 따른 의견수렴 공고-----	76
○ 사천시 공고 제2023-1173호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93
○ 사천시 공고 제2023-1174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02
○ 사천시 공고 제2023-1175호	사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53
○ 사천시 공고 제2023-117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166
○ 사천시 공고 제2023-1179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67

회 람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규칙 제82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규칙 제82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사천시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사천시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만20세”를 “20세”로 한다.

제2조(「사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의 개정) 사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3조(「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규칙 제82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개정 2023. 8. 24.>

사천시 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1,008	534(3)	25	138	57(1)	27	126	10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977	532(3)	25	109	57(1)	27	126	101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4	1	2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51	26	2	6	3	1	7	6	
	행정	8	6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0	9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3					1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5급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6급	소계	254	161	4	26	13	6	30	14	
		행정	52	48	2		2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진료	1			1						
	환경	1	1								
	시설	16	15			1					
	행정+세무	12	8			1		1	2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23	14			1	1	3	4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5	1		1		2	1			
	행정+녹지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30	28	2						
	농업+녹지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5			5					
	행정+세무+사회복지	4					1	2	1	
	행정+세무+농업	2						2		
	행정+세무+시설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전산+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4	1					3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녹지	1	1							
	행정+공업+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10	10							
	행정+농업+녹지	7	4					3		
	행정+농업+수의	2			2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시설	7	3					4		
	행정+해양수산+시설	3	2						1	
	행정+보건+보건진료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위생	2				2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운전+방호	1	1							
	공업+시설+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전산+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2			2					
	행정+공업+농업+해양수산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환경+위생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7급	소계	286	165	13	37	15	6	28	22	
	행정	82	47	12		4	1	12	6	
	세무	6	5						1	
	사회복지	19	3				1	9	6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3	3							
	수의	1			1					
	해양수산	3	3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7급	보건	4			4					
	의료기술	2			2					
	간호	4			4					
	보건진료	8			8					
	환경	2	2							
	시설	20	17			2	1			
	방재안전	1	1							
	운전	2	2							
	행정+세무	11	7					1	3	
	행정+전산	6	5			1				
	행정+사회복지	12	8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5	1		1		1	1	1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3				2			1	
	행정+시설	27	25					1	1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보건진료	2			2					
	보건+간호	2			2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1			1					
	시설+방재안전	2	2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농업	1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7급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5	4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6	3			3				
	행정+공업+시설	6	6							
	행정+농업+녹지	4	3					1		
	행정+농업+시설	4	3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농업+수의+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8급	소계	249	118	3	33	12	11	35	37	
	행정	62	27			1	6	12	16	
	세무	2	2							
	사회복지	8	3				1	2	2	
	속기	1		1						
	공업	2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1			1					
	의료기술	3			3					
	간호	20			6		1	7	6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8급	보건진료	3			3					
	시설	17	13			1		3		
	운전	4	1	1		2				
	전기운영	2	2							
	행정+세무	12	6					2	4	
	행정+전산	3	3							
	행정+사회복지	17	9			1	1	2	4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5	1					2	2	
	행정+해양수산	5	5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3	1			2				
	행정+시설	21	18			1		1	1	
	행정+방재안전	1	1							
	사회복지+보건	1	1							
	사회복지+간호	2					1		1	
	공업+시설	2	2							
	농업+녹지	1			1					
	보건+간호	7			7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2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5	4			1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농업+녹지	6	2				1	2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8급	행정+농업+시설	2	2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9급	소계	129	57(3)	2	5	14(1)	3	26	22	
	행정	26	10(3)			1(1)		9	6	
	세무	2	2							
	사회복지	12	3				1	1	7	
	사서	5				5				
	속기	1		1						
	방호	2					1		1	
	공업	2	1			1				
	농업	1			1					
	의료기술	1			1					
	환경	1	1							
	시설	10	7			2		1		
	운전	4	1	1	1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1	7					9	5	
	행정+사서	2				2				
	행정+농업	7			2		1	1	3	
	행정+녹지	3	3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9급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시설	9	9							
	행정+방재안전	2	2							
	공업+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5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	-							
별정6급 상당	비서	-	-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규칙 제82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2. 시 관내 운수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면허를 양수·상속받거나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양도·양수, 상속, 대리운전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 관내 운수업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훈령 제450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3. 8. 2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총괄

직급별 부서별	합계	일 반 직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1,008	977	1	7	51	254	286	249	129		1	29	1
기획예산담당관	18	18			1	7	7	2	1				
공보감사담당관	22	22			1	9	8	4					
행정과	35	33	1	1	1	10	12	5	3		1		1
주민복지과	23	23			1	7	5	5	5				
노인장애인과	19	19			1	6	5	3	4				
여성가족과	23	23			1	8	7	5	2				
민원과	13	13			1	4	3	4	1				
세무과	31	31			1	8	11	7	4				
회계과	21	21			1	5	6	7	2				
우주항공과	18	18		1	1	6	7	2	1				
투자유치산단과	20	20			1	7	6	5	1				
지역경제과	18	18			1	6	3	6	2				
정보통신과	14	14			1	5	4	2	2				
토지관리과	19	19			1	4	5	5	4				
문화체육과	19	19		1	1	6	5	3	3				
관광진흥과	17	17			1	5	6	2	3				
해양수산과	27	27			1	7	7	10	2				
환경보호과	16	16			1	5	5	3	2				
교통행정과	16	16			1	4	5	5	1				
녹지공원과	23	23			1	7	8	3	4				
재난안전과	23	23		1	1	7	8	4	2				
도시과	18	18			1	5	7	4	1				
건축과	25	25			1	7	6	9	2				
건설과	16	16			1	5	5	4	1				

부서별 직급별	합계	일 반 직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도 로 과	20	20			1	5	7	5	2				
도시재생과	18	18			1	5	6	4	2				
의회사무국	25	25		1	2	4	13	3	2				
보건소	82	82		1	3	18	29	29	2				
농업기술센터	56	27		1	3	8	8	4	3			29	
평생학습센터	18	18			1	4	4	2	7				
환경사업소	17	17			1	4	4	5	3				
상하수도사업소	22	22			1	5	7	5	4				
신수출장소	2	2				1	1						
사 천 읍	27	27			1	6	6	11	3				
정 동 면	19	19			1	4	4	4	6				
사 남 면	21	21			1	5	6	8	1				
용 현 면	19	19			1	5	3	7	3				
축 동 면	16	16			1	4	3	5	3				
곤 양 면	17	17			1	4	4	4	4				
곤 명 면	17	17			1	4	4	4	4				
서 포 면	17	17			1	4	4	3	5				
동 서 동	18	18			1	3	4	7	3				
선 구 동	16	16			1	2	3	5	5				
동 서 금 동	15	15			1	2	3	6	3				
벌 용 동	20	20			1	3	6	8	2				
향 촌 동	16	16			1	2	3	6	4				
남 양 동	16	16			1	2	3	5	5				

□ 기획예산담당관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8		1	7	7	2	1		
일반직	소 계	18		1	7	7	2	1		
	행정	13		1	6	4	1	1		
	행정+세무	3			1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전산	1				1				

□ 공보감사담당관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9	8	4			
일반직	소 계	22		1	9	8	4			
	행정	12		1	5	3	3			
	시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시설	6			2	3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 행정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정무직
총합계		35	1	1	1	10	12	5	3	1	1
일반직	소 계	33	1	1	1	10	12	5	3		
	부이사관	1	1								
	행 정	24		1	1	9	8	4	1		
	운 전	2					2				
	행정+전산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3				1	1		1		
연구직	소 계	1								1	
	기록연구사	1								1	
정무직	소 계	1									1
	정 무 직	1									1

□ 주민복지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3		1	7	5	5	5		
일반직	소 계	23		1	7	5	5	5		
	행 정	4			1	1	1	1		
	사회복지	5			1	1	1	2		
	행정+사회복지	13		1	5	3	2	2		
	사회복지+보건	1					1			

□ 노인장애인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6	5	3	4	
일반직	소 계	19		1	6	5	3	4		
	행 정	2			1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2		1	3	1	3	4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 여성가족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3		1	8	7	5	2	
일반직	소 계	23		1	8	7	5	2		
	행 정	5			2	3				
	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15		1	6	3	4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 민원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3		1	4	3	4	1	
일반직	소 계	13		1	4	3	4	1		
	행 정	9		1	3	2	2	1		
	행정+전산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1		1			

□ 세무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31		1	8	11	7	4	
일 반 직	소 계	31		1	8	11	7	4		
	행 정	5		1	1	1	1	1		
	세 무	11			2	5	2	2		
	행정+세무	15			5	5	4	1		

□ 회계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5	6	7	2	
일 반 직	소 계	21		1	5	6	7	2		
	행 정	12		1	2	3	5	1		
	운 전	1						1		
	행정+세무	3			1	1	1			
	행정+공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 우주항공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8	1	1	6	7	2	1			
일반직	소 계	18	1	1	6	7	2	1			
	행 정	11			4	5	1	1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5		1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 투자유치산단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0		1	7	6	5	1			
일반직	소 계	20		1	7	6	5	1			
	행 정	3			1	1	1				
	시 설	6			2	3	1				
	행정+시설	8		1	3	1	2	1			
	행정+공업+환경	2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 지역경제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8		1	6	3	6	2			
일반직	소 계	18		1	6	3	6	2			
	행정	5			3	1		1			
	사회복지	1					1				
	공업	1						1			
	전기운영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3			1		2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1			1						

□ 정보통신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4		1	5	4	2	2			
일반직	소 계	14		1	5	4	2	2			
	행정	1			1						
	행정+전산	3			1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8			3	3	1	1			
	행정+공업+시설	1						1			

□ 토지관리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9		1	4	5	5	4			
일반직	소 계	19		1	4	5	5	4			
	시 설	8			2	2	1	3			
	행정+시설	10		1	2	3	3	1			
	행정+전산+시설	1					1				

□ 문화체육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9	1	1	6	5	3	3			
일반직	소 계	19	1	1	6	5	3	3			
	행 정	4				2	1	1			
	행정+기술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6		1	2	1	1	1			
	행정+공업+시설	6			3	1	1	1			
	행정+운전+방호	1			1						

□ 관광진흥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5	6	2	3	
일반직	소 계	17		1	5	6	2	3		
	행정	5			3	2				
	시설	2				1		1		
	행정+시설	8		1	1	3	2	1		
	행정+공업+시설	2			1			1		

□ 해양수산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7		1	7	7	10	2	
일반직	소 계	27		1	7	7	10	2		
	해양수산	9			3	3	3			
	행정+해양수산	9		1		2	5	1		
	행정+시설	3			1		1	1		
	해양수산+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3			2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1	1			

□ 환경보호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6		1	5	5	3	2	
일반직	소 계	16		1	5	5	3	2		
	행 정	1				1				
	공 업	1					1			
	환 경	4			1	2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공업+환경	5			1	2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 교통행정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6		1	4	5	5	1	
일반직	소 계	16		1	4	5	5	1		
	행 정	7			2	3	2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6		1	2	1	1	1		

□ 녹지공원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3		1	7	8	3	4			
일반직	소 계	23		1	7	8	3	4			
	행 정	1					1				
	녹 지	5			1	3	1				
	행정+녹지	6			1	2		3			
	공업+시설	1						1			
	행정+공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	8			4	3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 재난안전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3	1	1	7	8	4	2			
일반직	소 계	23	1	1	7	8	4	2			
	행 정	1			1						
	방재안전	1				1					
	행정+기술	1	1								
	행정+전산	2			1	1					
	행정+시설	9			4	2	3				
	행정+방재안전	4				1	1	2			
	행정+보건+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3			1	2					
	행정+농업+시설	1		1							

□ 도시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8		1	5	7	4	1		
일반직	소 계	18		1	5	7	4	1		
	행 정	4			2	1	1			
	시 설	6			2	2	1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5		1	1	2	1			
	행정+농업+시설	2				1	1			

□ 건축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5		1	7	6	9	2		
일반직	소 계	25		1	7	6	9	2		
	행 정	1					1			
	사회복지	1					1			
	시 설	11			2	3	5	1		
	행정+시설	7		1	3	2		1		
	공업+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4			2	1	1			

□ 건설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6		1	5	5	4	1	
일 반 직	소 계	16		1	5	5	4	1		
	행 정	4			1	1	1	1		
	시 설	4			2		2			
	행정+시설	3		1	1	1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 도로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0		1	5	7	5	2	
일 반 직	소 계	20		1	5	7	5	2		
	행 정	1				1				
	시 설	9		1	2	3	2	1		
	운 전	1					1			
	전기운영	1					1			
	행정+시설	5			2	2	1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공업+시설	2			1			1		

□ 도시재생과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8		1	5	6	4	2			
일반직	소 계	18		1	5	6	4	2			
	행 정	3				2	1				
	시 설	6			3	2	1				
	행정+시설	6		1	1	2		2			
	공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공업+시설	1			1						

□ 의회사무국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5	1	2	4	13	3	2			
일반직	소 계	25	1	2	4	13	3	2			
	행 정	15		1	2	12					
	속 기	2					1	1			
	운 전	2					1	1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3		1	2						
	행정+전산+방송통신	2				1	1				

□ 보건소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82	1	3	18	29	29	2	
일반직	소 계	82	1	3	18	29	29	2		
	기술	1	1							
	보건	5				4	1			
	의료기술	6				2	3	1		
	간호	10				4	6			
	보건진료	12			1	8	3			
	운전	1						1		
	행정+보건	5			3	1	1			
	보건+보건진료	2				2				
	보건+의료기술	2				1	1			
	보건+간호	14			5	2	7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보건진료	1			1					
	행정+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1			3	3	5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8		3	2	1	2				

□ 농업기술센터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56	1	3	8	8	4	3	
일 반 직	소 계	27	1	3	8	8	4	3		
	공 업	1				1				
	농 업	9			3	2	3	1		
	수 의	1				1				
	행정+농업	4			1	1		2		
	농업+녹지	3			1	1	1			
	농업+수의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수의	2			2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농업+수의+환경	1				1				
지 도 직	소 계	29								29
	농촌지도사	29								29

□ 평생학습센터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8		1	4	4	2	7		
일 반 직	소 계	18		1	4	4	2	7		
	행 정	5		1	2	2				
	사 서	5						5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서	3					1	2		
	행정+공업	1				1				

□ 환경사업소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4	4	5	3		
일 반 직	소 계	17		1	4	4	5	3		
	공 업	2			1			1		
	운 전	3					2	1		
	행정+환경	3				2	1			
	행정+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5			1	2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위생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 상하수도사업소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2		1	5	7	5	4			
일 반 직	소 계	22		1	5	7	5	4			
	행 정	4				2	1	1			
	공 업	1					1				
	시 설	6			1	2	1	2			
	행정+환경	1					1				
	공업+시설	2				2					
	행정+공업+환경	3			1	1		1			
	행정+환경+위생	1			1						
	공업+시설+환경	1			1						
	보건+공업+환경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 신수출장소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			1	1					
일 반 직	소 계	2			1	1					
	행 정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 사천읍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7		1	6	6	11	3		
일반직	소 계	27		1	6	6	11	3		
	행정	7				1	6			
	사회복지	3				1	1	1		
	간 호	1					1			
	시 설	1				1				
	방 호	1						1		
	행정+사회복지	4			1	2	1			
	행정+농업	4			2	1		1		
	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 정동면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4	4	4	6		
일반직	소 계	19		1	4	4	4	6		
	행정	5				2	1	2		
	사회복지	3				2		1		
	간 호	1					1			
	시 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 사남면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1		1	5	6	8	1			
일 반 직	소 계	21		1	5	6	8	1			
	행 정	7				2	5				
	사회복지	2				2					
	간 호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1		1	1			
	행정+농업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 용현면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9		1	5	3	7	3			
일 반 직	소 계	19		1	5	3	7	3			
	행 정	6				1	3	2			
	사회복지	2				1	1				
	간 호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환경+위생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 축동면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4	3	5	3			
일 반 직	소 계	16		1	4	3	5	3			
	행 정	4				1	2	1			
	사회복지	1				1					
	간 호	1					1				
	시 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 곤양면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7		1	4	4	4	4			
일 반 직	소 계	17		1	4	4	4	4			
	행 정	4				2		2			
	사회복지	2				1	1				
	간 호	1					1				
	시 설	1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전산+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 곤명면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7		1	4	4	4	4			
일 반 직	소 계	17		1	4	4	4	4			
	행 정	4				2	1	1			
	사회복지	1				1					
	간 호	1					1				
	행정+세무	2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 서포면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7		1	4	4	3	5			
일 반 직	소 계	17		1	4	4	3	5			
	행 정	3				2		1			
	사회복지	1				1					
	간 호	1					1				
	시 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공업+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1	1							

□ 동서동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8		1	3	4	7	3			
일 반 직	소 계	18		1	3	4	7	3			
	행 정	6				1	5				
	사회복지	3				1		2			
	간 호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1		1	1			
	행정+농업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 선구동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2	3	5	5			
일 반 직	소 계	16		1	2	3	5	5			
	행 정	5				1	2	2			
	세 무	1				1					
	사회복지	3				1		2			
	간 호	1					1				
	행정+세무	2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1						1			
	행정+전산+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 동서금동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5		1	2	3	6	3			
일 반 직	소 계	15		1	2	3	6	3			
	행 정	4				1	3				
	사회복지	2				1		1			
	간 호	1					1				
	행정+세무	3			1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 별용동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0		1	3	6	8	2			
일 반 직	소 계	20		1	3	6	8	2			
	행 정	4				1	2	1			
	사회복지	3				2	1				
	간 호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4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 향촌동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2	3	6	4			
일 반 직	소 계	16		1	2	3	6	4			
	행 정	4				1	2	1			
	사회복지	2					1	1			
	방 호	1						1			
	간 호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 남양동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2	3	5	5			
일 반 직	소 계	16		1	2	3	5	5			
	행 정	5				1	2	2			
	사회복지	2				1		1			
	간 호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1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고시 제2023-20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8. 24.

사 천 시 장

허가번호 (허가일자)	위 치	변경 허가사항			사용목적	피 허가자	
		구분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2023-6 (2023.8.14.)	사천시 대방동 681-2번지선	기간	2018.08.24.~ 2023.08.23.	2023.08.24.~ 2028.08.23.	유람선 접안용 부잔교 및 요트,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사천시 유람선길 42	삼천포 유람선협회 (이삼수 외 16인)
	면적	계: 1,375.44 -직접: 439.84 -간접: 935.60	계: 1,515.04 -직접: 511.84 -간접: 1,003.20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고시 제2023-205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내용

시설명칭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정현황	
구분	명칭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사업량	
						연장	폭	
소교량	송포제3무명교	사천시	죽림동		571-2	571-27	16	8

2.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시설명칭		사업시기	소요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구분	명칭				
소교량	송포제3무명교	2024~2025년	300	소교량 재가설 (L=16m, B=8.0m)	

※ 사업 시기, 예산, 내용 등은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3.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청

4.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일 : 2023. 8. 24.

5. 문의처 : 사천시청 재난안전과(☎055-831-3315)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 송포제3무명교 위치도(사천시 죽림동 571-27)



□ 송포제3무명교 사진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공고 제2023-1152호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기금 활용 계획과 목적에 맞는 지속적인 경영개선 사업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나. 용자 소요자금의 한도(퍼센트) 삭제(안 제15조)

다. 조문 체계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 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761, FAX : 831-6051)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농축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현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용자 한도액을 수요에 맞게 개정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 사업추진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나. 용자 소요자금의 한도(퍼센트) 삭제(안 제15조)

다. 조문 체계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24. ~ 2023 9. 13.(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을 “이란”으로, “제3조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제3조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경영체”란”을 ““법인체”란”으로, “제3조4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를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5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법인체”로, “에게”를 “에”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어업인”을 “농어업인 등”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용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5천만 원
2. 생산자단체: 1억 원
3. 법인체: 3억 원

제1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 개정 2018.12.31.></p> <p>1. (생 략)</p> <p>2. “<u>농어업인</u>”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2호 및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3. “<u>농어업경영체</u>”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3호 및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4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p> <p>4. “<u>생산자단체</u>”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4호 및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p> <p>5.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u>이란</u> ----- ----- ----- ----- <u>제3조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p> <p>3. “<u>법인체</u>”란----- ----- ----- -----<u>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을</u>----- -----.</p> <p>4. ----- -----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u>----- -----.</p> <p>5. (현행과 같음)</p>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생략)

① 사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
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촌발전자
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
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
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
다.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생
략)

①·② 삭제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농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
립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
라 한다)과의 위탁관리 협약에 따
르고,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현행과 같음)

① -----
-----법인체-----

-----에-----

② ----- 2028년 ---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현행
과 같음)

③ -----
농어업인 등-----

제7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본조 개정 2018.12.31., 2020.12.17.>

제15조(용자방법 및 조건) ① ~ ⑤ (생략)

⑥ 용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천만원, 생산자단체의 경우 1억원, 법인의 경우 3억원으로 하며, 소요자금의 70퍼센트 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6조(용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① (생략)

제7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

--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용자방법 및 조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용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5천만 원

2. 생산자단체: 1억 원

3. 법인체: 3억 원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용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현행 제1항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 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①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공고 제2023-1159호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도로의 종류	구 지방도	노선명	1001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공사차량을 제외한 차량	구간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145-2 ~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338-1
기간	2023년 8월 28일(월) ~ 해제시 까지		

이유

지방도 도로공사 사업(터널시공)추진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그 밖의 사항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157-5번지 지방도 건설공사 현장을 우회하여 통행.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통행금지구간 및 우회도로 위치도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공고 제2023-1160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개정(2023.04.27.)에 따라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현실화 하고, [별표1]의 5. 수영장이용료를 8.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다자녀 정의 수정

(안 제18조 관련 별표 2)

나.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1]의 5. 수영장 이용료 명칭 정비

1) 수영장 이용료→사천 실내수영장 이용료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20,

FAX : 831-6013)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개정(2023.04.27.)에 따라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현실화 하고, [별표1]의 5. 수영장이용료를 8.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다자녀 정의 수정

(안 제18조 관련 별표 2)

나.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1]의 5. 수영장 이용료 명칭 정비

1) 수영장 이용료→사천 실내수영장 이용료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24 ~ 2023. 9. 13.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있음(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4. 27.>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기본사용료

구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20,000	30,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일)	80,000	12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50,000		
사주체육관 삼천포보조체육관 (부대시설 제외)	조기	체육경기	1회(일)	6,000	7,000		
		체육이외	1회(일)	10,000	1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6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9,000	12,000		
		체육이외	1회(일)	25,000	35,000		
삼천포 생활체육관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40,000	탁구장, 당 구 장 개별 적용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20,000	15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60,000	250,000		
수영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읍면동지역 축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00,000	150,000		
사등야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50,000		
공 도 장	1일(1사대)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인공암벽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풋 살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족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테니스장	개인	인조 마사	체육경기	1회 2시간 1면당	7,000	8,000	※ 단 체 는 같은 동호 회나 같은 소속의 구 성원이 10명 이상인 경 우에 적용
			"	"	5,000	6,000	
	단체	인조 마사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20,000	3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10,000	15,000	

2. 전용사용료(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구장별 적용)

사용시간별	사 용 료	비 고
연 20회 이내	○ 기본사용료 × 사용 회수	
연 2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 0.9	10% 할인
연 3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 0.8	20% 할인

3. 연습사용료

시 설 별	구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1,0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종합운동장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궁도장	개인	1회 2시간	2,000원	1사대 기준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1사대 기준
인공암벽장	개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	1회 2시간	1명당 500원	

※ 단체연습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4.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프시설	1일 1회 (8시간내)	20,000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동일 적용
전기 및 조명	kw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5. 사천 실내수영장 이용료

구 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 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군인, 학생	1,500		
	어린이, 경로대상	1,000		

회 원	일반인	60,000		
	군인, 학생	50,000		
	어린이, 경로대상	40,000		
	체력단련실이용	10,000		
	월 강습료	10,000		

수영복 대여료	수모	1,000		
	수경	1,000		
	수영복	2,000		

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단위: 원)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실내체육관	30,000	20,000	2,000	단체는 10명 이상
다목적실	30,000	20,000	2,000	
에어로빅장	30,000	20,000	2,000	
탁구장	30,000	20,000	2,000	
헬스장	35,000	25,000	2,500	

- 이용시간 : 1명 당 1회 2시간
-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 월 회원 매월 기준
- 사천시 거주자 우선

7. 삼천포 생활체육관 이용료

(단위: 원)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탁구장	40,000	30,000	3,000	1명/2시간
당구장	-	-	1,200원	1테이블/10분

- 단체는 10명 이상
-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 월 회원 매월 기준
- 사천시 거주자 우선

8.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원)

종목	1일 이용			월회원 (자유반)	강습반 (월회원)	비고
	구분	개인	단체			
수영장	어른	3,500	3,000	55,000	65,000	
	군인·학생	3,000	2,500	45,000	55,000	
	어린이·경로대상	2,500	2,000	35,000	45,000	
헬스	전회원	3,000	-	40,000	-	
에어로빅	전회원	-	-	-	* 주5일: 40,000 주3일: 30,000	
생활스포츠 (댄스, 요가, 필라테스)	전회원	-	-	-	* 주5일: 60,000 주3일: 40,000	
탁구	전회원	3,000	-	40,000		1명/ 2시간

□ 대관 및 부대시설 전용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전용 사용료		비고
	기준(시간)	금액	
다목적 강당	4	60,000	
음악실	4	20,000	
문화교실1	4	40,000	
문화교실2	4	20,000	
에어로빅실	4	60,000	
G.X룸	4	40,000	
냉·난방비	4	20,000	·냉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애프	4	20,000	

9. 중계 방송료

종 별	기준	요 액	비 고
텔레비전 중계	1일	20,000원	○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	1일	10,000원	
녹화 또는 녹음	1일	중계방송료의 반액	

10.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1㎡당(월액) 1등급 2등급	8,000원 6,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 1개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 1등급: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애드벌룬 및 유사물 계양 에 의한 행위	1일 1개	3,000원	

[별표 2]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8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80%	
○ 사천시유도체육관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유도전용 훈련장으로 이용하거나 각종 대회 유치목적으로 사용할 때	80%	
○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80%	
○ 사천시체육회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의 정기대회 (연1회)	80%	
○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	80%	
○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 아래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50%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	50%	별표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5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	수영장만 적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수영장만 적용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5% 추가 할인

신 · 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p> <p>5. 수영장 이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이용자</th> <th>개인(원)</th> <th>단체(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개인</td> <td>일반인</td> <td>4,000</td> <td>3,500</td> <td rowspan="6">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td> </tr> <tr> <td>군인, 학생</td> <td>3,500</td> <td>3,000</td> </tr> <tr> <td>어린이, 경로대상</td> <td>3,000</td> <td>2,500</td> </tr> <tr> <td rowspan="3">선수훈련</td> <td>일반인</td> <td>2,000</td> <td></td> </tr> <tr> <td>군인, 학생</td> <td>1,500</td> <td></td> </tr> <tr> <td>어린이, 경로대상</td> <td>1,00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고	개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 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군인, 학생	1,500		어린이, 경로대상	1,000		<p>[별표 1]</p> <p>5. 사천 실내수영장 이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이용자</th> <th>개인(원)</th> <th>단체(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개인</td> <td>일반인</td> <td>4,000</td> <td>3,500</td> <td rowspan="6">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td> </tr> <tr> <td>군인, 학생</td> <td>3,500</td> <td>3,000</td> </tr> <tr> <td>어린이, 경로대상</td> <td>3,000</td> <td>2,500</td> </tr> <tr> <td rowspan="3">선수훈련</td> <td>일반인</td> <td>2,000</td> <td></td> </tr> <tr> <td>군인, 학생</td> <td>1,500</td> <td></td> </tr> <tr> <td>어린이, 경로대상</td> <td>1,00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고	개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 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군인, 학생	1,500		어린이, 경로대상	1,000																											
구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고																																																																											
개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 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군인, 학생	1,500																																																																													
	어린이, 경로대상	1,000																																																																													
구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고																																																																											
개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 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군인, 학생	1,500																																																																													
	어린이, 경로대상	1,000																																																																													
<p>[별표 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감면률 (할인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td> <td>50%</td> <td></td> </tr> <tr> <td>○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td> <td>50%</td> <td></td> </tr> <tr> <t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td> <td>50%</td> <td></td> </tr> <tr> <td>○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td> <td>50%</td> <td>별표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td> </tr> <tr> <td>○ 「사천시 인구증가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td> <td>50%</td> <td>수영장만 적용</td> </tr> <tr> <td>○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td> <td>50%</td> <td></td> </tr> <tr> <td>○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td> <td>50%</td> <td></td> </tr> <tr> <td>○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td> <td>50%</td> <td></td> </tr> <tr> <td>○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td> <td>50%</td> <td></td> </tr> <tr> <td>○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td> <td>20%</td> <td>수영장만 적용</td> </tr> <tr> <td>○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td> <td>10%</td> <td></td> </tr> <tr> <td>○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td> <td>50%</td> <td>수영장만 적용</td> </tr> </tbody> </table> <p>※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5% 추가 할인</p>	구분	감면률 (할인율)	비고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	50%	별표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 「사천시 인구증가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5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	수영장만 적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수영장만 적용	<p>[별표 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감면률 (할인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td> <td>50%</td> <td></td> </tr> <tr> <td>○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td> <td>50%</td> <td></td> </tr> <tr> <t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td> <td>50%</td> <td></td> </tr> <tr> <td>○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td> <td>50%</td> <td>별표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td> </tr> <tr> <td>○ 「사천시 인구증가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td> <td>50%</td> <td>수영장만 적용</td> </tr> <tr> <td>○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td> <td>50%</td> <td></td> </tr> <tr> <td>○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td> <td>50%</td> <td></td> </tr> <tr> <td>○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td> <td>50%</td> <td></td> </tr> <tr> <td>○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td> <td>50%</td> <td></td> </tr> <tr> <td>○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td> <td>20%</td> <td>수영장만 적용</td> </tr> <tr> <td>○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td> <td>10%</td> <td></td> </tr> <tr> <td>○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td> <td>50%</td> <td>수영장만 적용</td> </tr> </tbody> </table> <p>※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5% 추가 할인</p>	구분	감면률 (할인율)	비고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	50%	별표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 「사천시 인구증가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5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	수영장만 적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수영장만 적용
구분	감면률 (할인율)	비고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	50%	별표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 「사천시 인구증가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5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	수영장만 적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수영장만 적용																																																																													
구분	감면률 (할인율)	비고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	50%	별표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 「사천시 인구증가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5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	수영장만 적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수영장만 적용																																																																													

관 련 법 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공고 제2023-1165호

도로명 부여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3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로명 및 도로구간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24.

사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8. 24. ~ 2023. 9. 7.(14일간)

2. 공고내용 : 도로명 부여 의견 수렴

3.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도로명 부여 조서 및 위치도(별첨)

나. 열람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4. 의견 제출방법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등으로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 편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나. 전 화 : 055-831-2822 (FAX: 055-831-6929)

5. 도로명의 결정 절차

도로명(안) 마련	의견수렴 공고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고 시
도로구간 설정 및 예비도로명 부여	14일이상	30일이내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

【붙임】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의견서

성 명 및 기관·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신 청 예비도로명			
부여 사유 (변경사유)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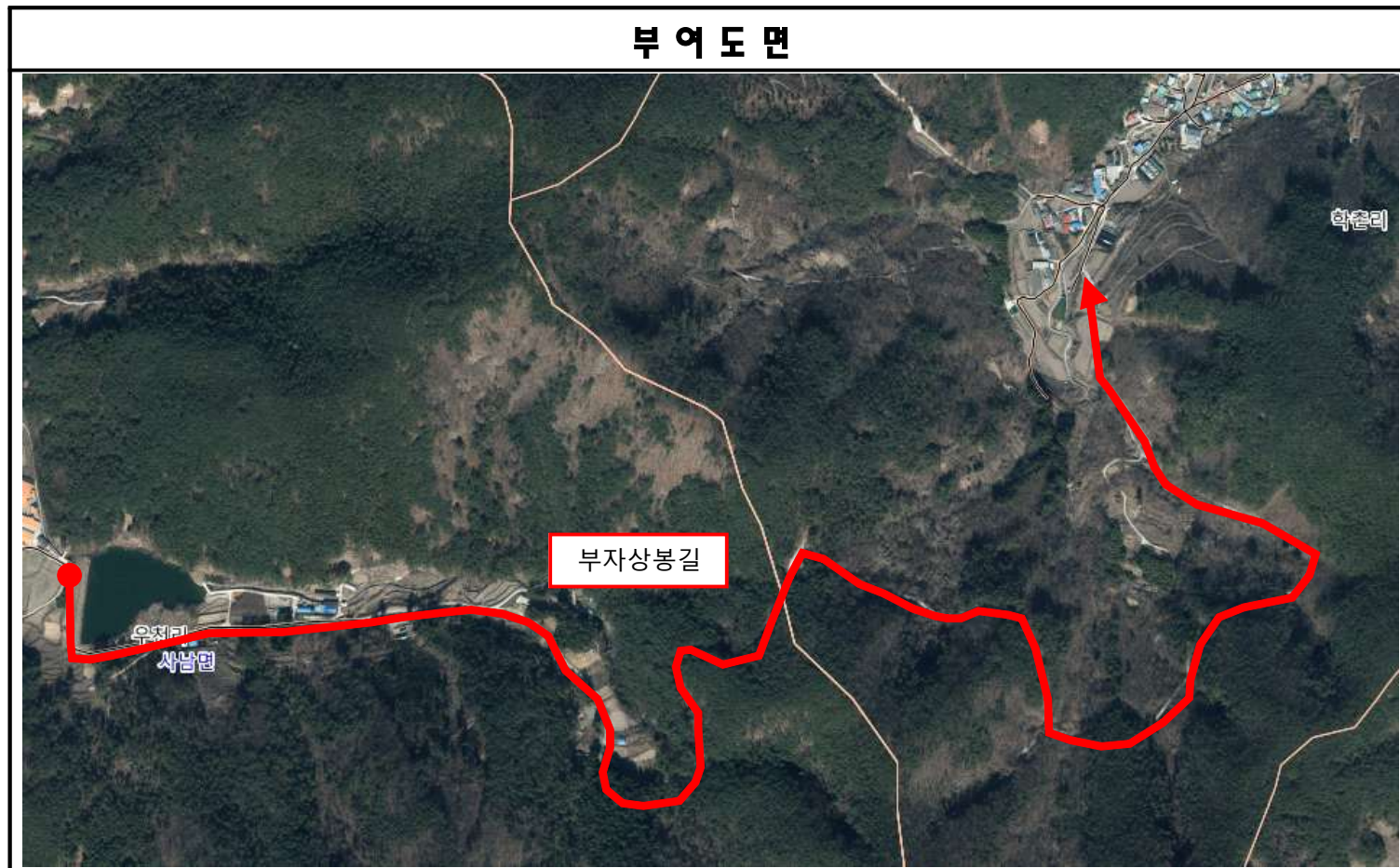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	화전봄골길	화전리 531-6	화전리 산200	도면 참조	566	7.8	길	10	114	사남화전대지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2020.9.~2023.12.)	사남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2	부자상봉길	사남면 우천리 356-1	정동면 학촌리 760	도면 참조	3050	3	길	20	1/306	임도길 도로명 부여	사남면 정동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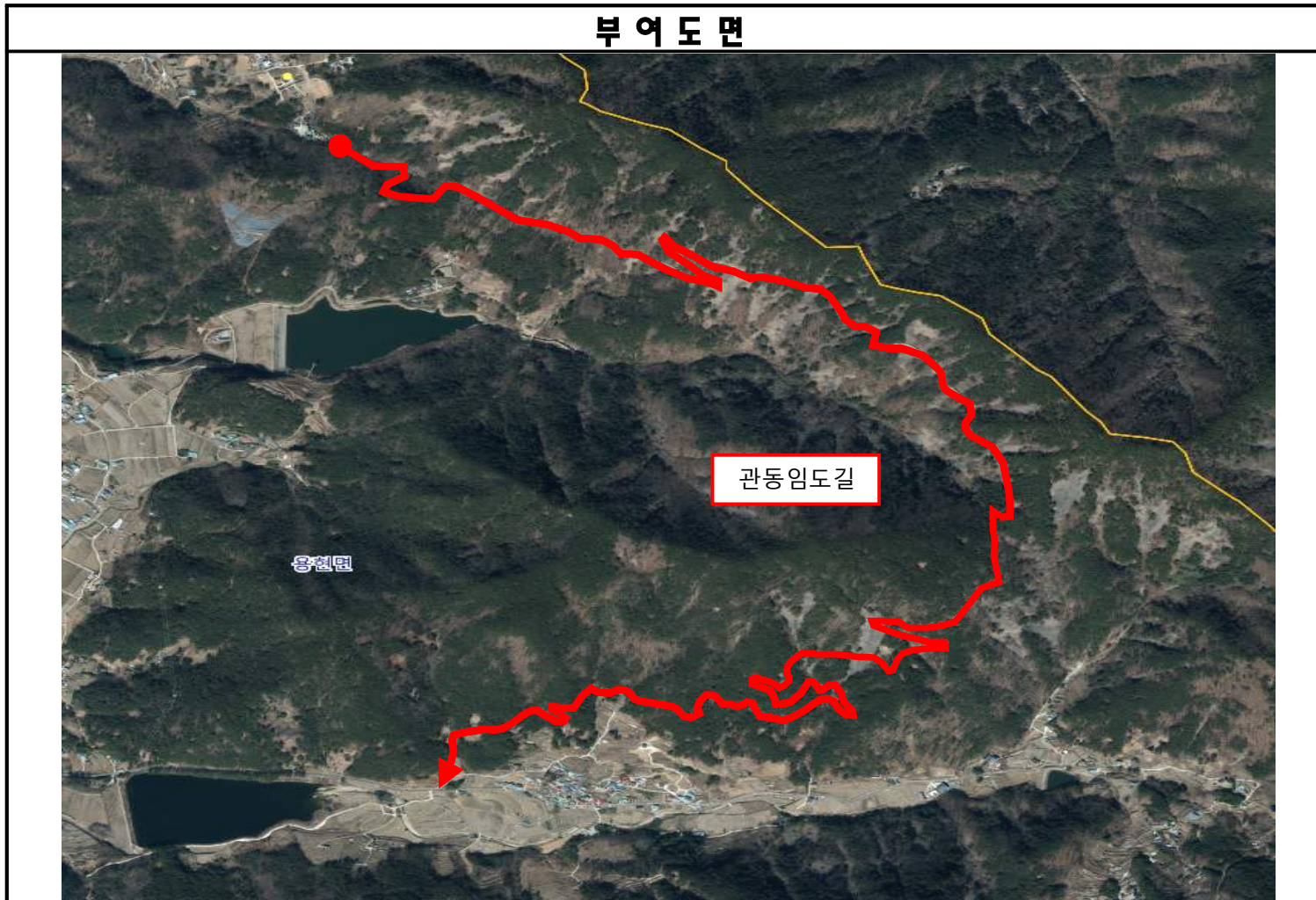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3	신덕1길	덕곡리536-18	덕곡리38-7	도면 참조	946	8.5	길	20	1/96	도로명 미부여 도로	용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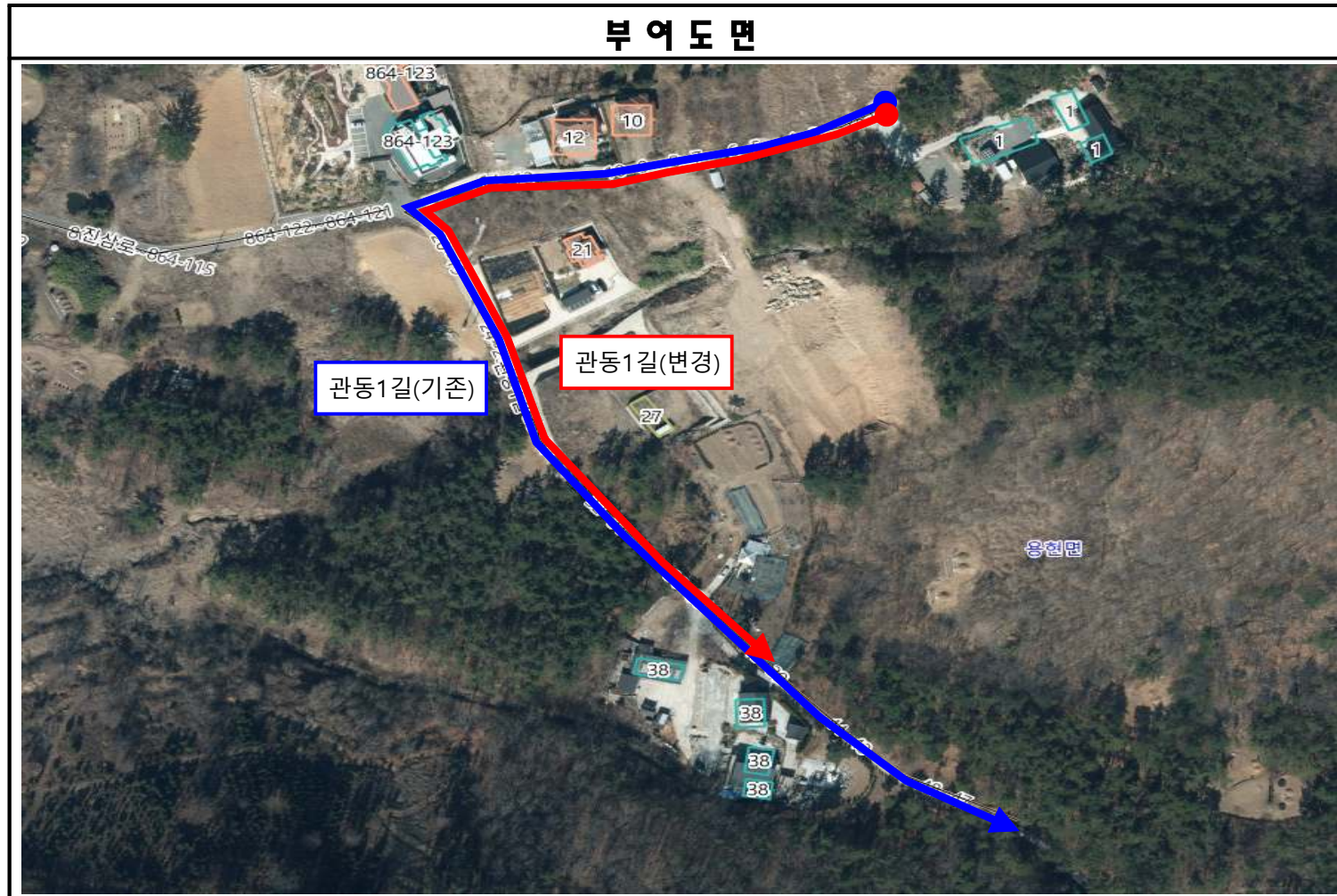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4	관동임도길	신복리 산138-1	용치리 558	도면 참조	6400	3.4	길	20	1/640	임도길 도로명 부여	용현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5	관동1길 (구간변경)	신복리 106-4	신복리 산144	도면 참조	390	5.8	길	20	1/38	'관동임도길' 부여에 따른 구간변경	용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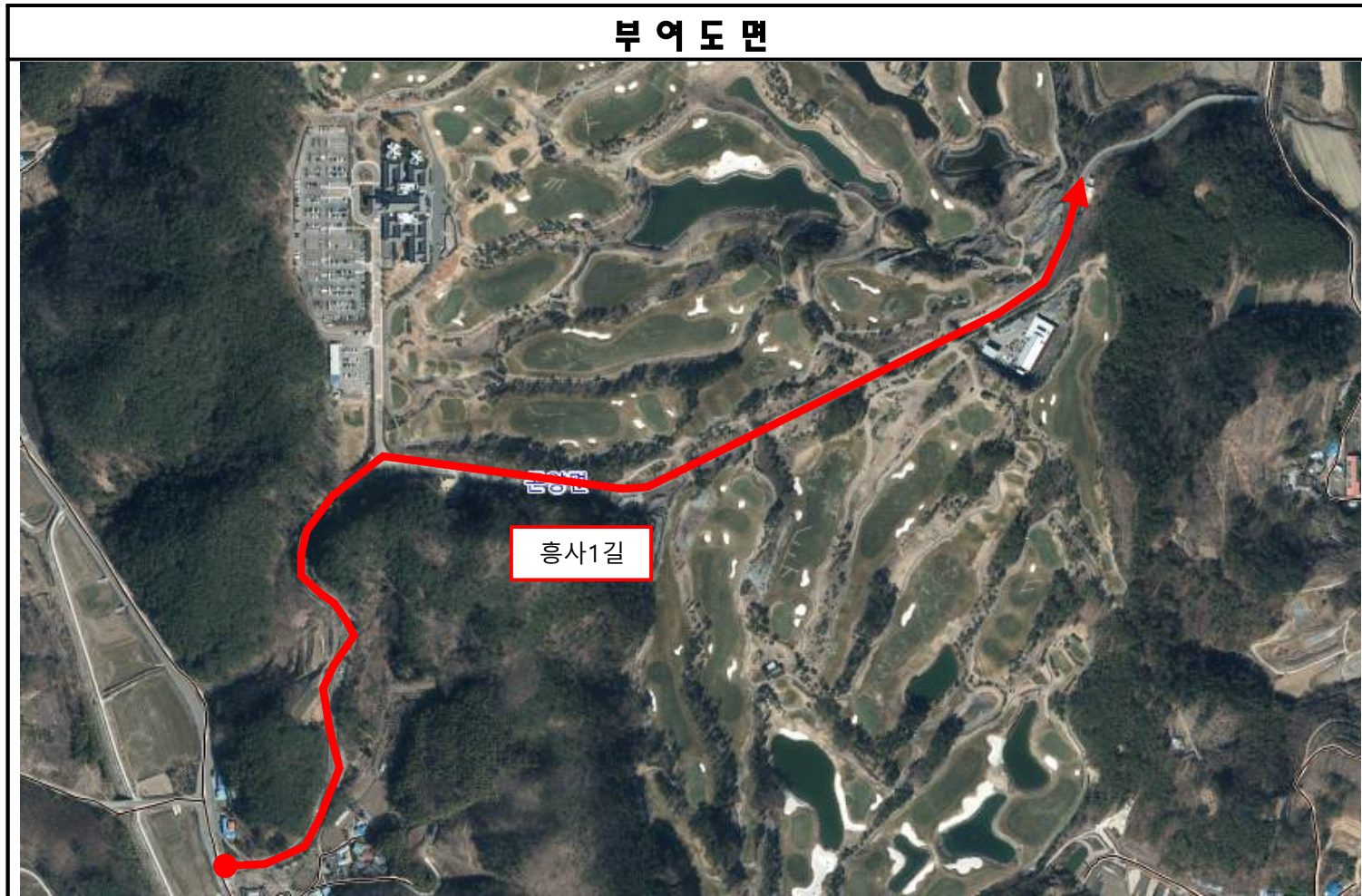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6	원계길 (구간변경)	배춘리 735-33	배춘리 768-11	도면 참조	337	18	길	10	1/68	축동 대길문 교차로 개선사업(2022.3.~2023.9.)	축동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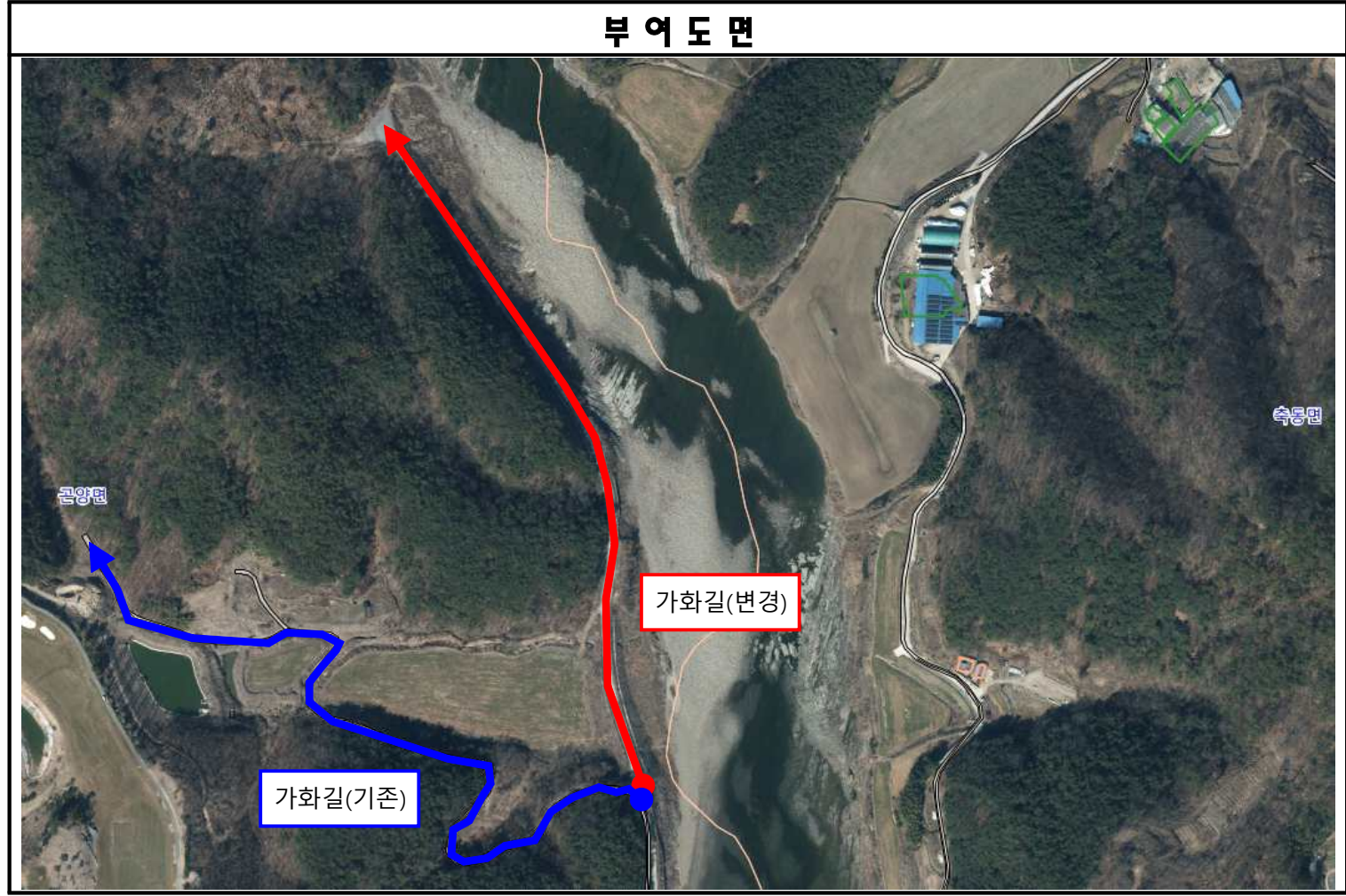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7	흥사1길	흥사리 277-10	가화리 990-5	도면 참조	1700	8	길	20	1/188	도로명 미부여 도로	곤양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8	가화길 (구간변경)	가화리 산117-19	가화리 553	도면 참조	585	5	길	10	874/992	가화도로 확·포장공사 (2012~2022)	곤양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9	금성독방길	금성리 1101	금성리 999	도면 참조	2180	3	길	20	1/218	도로명 미부여 도로	곤명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0	진도길(연장)	진도길 34	비토리 17-66	도면 참조	470	3.5	길	10	34/128	도로명 미부여 도로	서포면
11	진도길(종속)	진도길 34	비토리 산46-41	도면 참조	426	4	길	20	1/44	도로명 미부여 도로	서포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2	구우진길	자구로80	자혜리 산 33	도면 참조	332	5	길	10	1/68	주택단지개발(시행중)	서포면
13	구우진항길	자혜리20-11	항구 끝	도면 참조	183	7	길	20	1/20	항·포구 도로명 부여	서포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4	아포길 (중속폐지)	아포길149-29	아포길149-334	도면 참조	1490	3.5	길	20	-	'염전들길' 부여로 인한 폐지	서포면
15	염전들길	아포길149-29	선전리 산25	도면 참조	1900	3.5	길	20	1/190	'아포길' 중속구간 폐지로 인한 부여	서포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6	다평길	다평로 286	다평리1038-5	도면 참조	1280	3.3	길	20	1/128	농로 도로명 부여	서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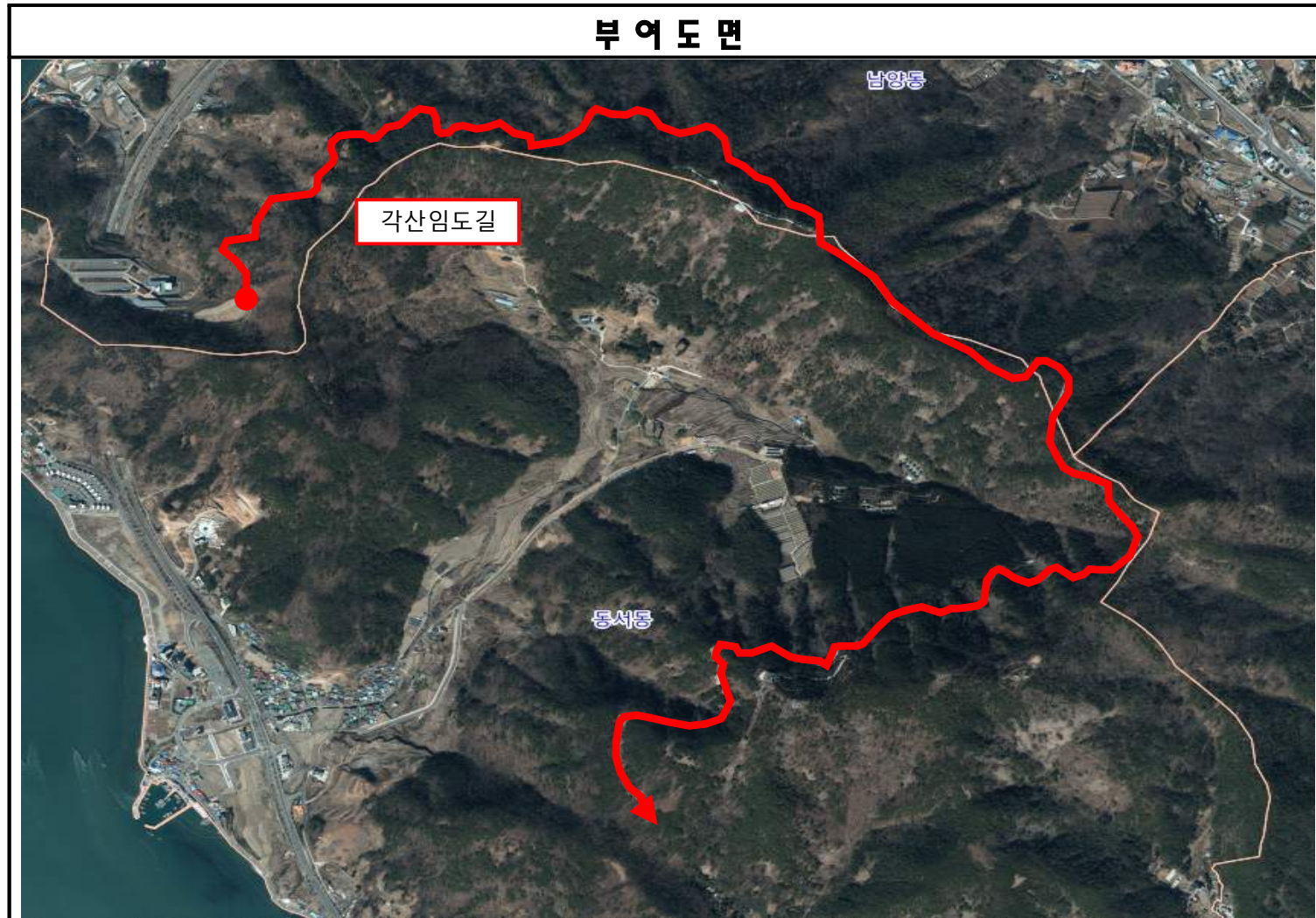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7	신수동길 (구간변경)	신수동길126	신수동길282	도면 참조	772	4	길	10	126/282	도로폐지에 의한 구간변경	동서동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8	각산임도길	송포동 산75	대방동 산46	도면 참조	6000	4.3	길	20	1/600	임도길 도로명 부여	남양동 동서동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공고 제2023-1173호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민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10, FAX: 831-6029)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민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24. ~ 2023. 9. 13.(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을 휴무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감염병의 확산·재난 발생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공고 제2023-1174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에 따라 전문직위 등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고, 임용시험 관련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안 제7조)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요건 추가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나.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대(안 제13조 및 제18조의2)

- 시험위원 위촉 시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촉해야 함을 추가 규정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시행 시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시험 과정에 대한 채용절차 점검 의무화

다.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정비(안 별표6, 별표 8의2, 별표 13)

라. 인사교류, 전문직위 및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근무경력가산점 부여 기준 신설(안 별표21)

마. 실적가산점에 관한 부여기준 변경(안 별표22)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6,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에 따라 전문직위 등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고, 임용시험 관련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안 제7조)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요건 추가

나.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대(안 제13조 및 제18조의2)

- 시험위원 위촉 시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촉해야 함을 추가 규정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시행 시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시험 과정에 대한 채용절차 점검 의무화

다.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정비(안 별표6, 별표 8의2, 별표 13)

라. 인사교류, 전문직위 및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근무경력가산점 부여 기준 신설(안 별표21)

마. 실적가산점에 관한 부여기준 변경(안 별표2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24. ~ 2023. 9. 13.

나) 제출의견: 없음

다) 반영여부: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로, “경우에는 시험실시 기관”을 “경우 시험실시기관”으로,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응시수수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사제지간”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안내하고”를 “안내하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와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6, 별표8의2, 별표13, 별표21 및 별표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무경력 가산점 및 실적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21, 별표2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1의 3. 전문직위로 근무한 경력 가산점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331호, 2022. 4. 27. 시행)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별표21의 4.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가산점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22의 1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실적가산점 기준에 따르며, 재난 및 안전관리 부서의 근무경력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7조제2항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훈자력법에 따른 자력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력증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 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편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일반전기	<p>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전 자	<p>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 능 장 : 전자기기</p> <p>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p>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p>기사자격증</p> <p>간편을 적용 :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p>
	금 속	<p>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 능 사 : 염색</p> <p>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일반화공	<p>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 능 장 : 위험물, 가스</p> <p>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학분석</p> <p>기 능 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평가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 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 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 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자격증 기사 비율 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평가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조 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훈자력법에 따른 자력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력증
	방 역		기사자력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력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력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력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력증 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력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산업기사 자력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력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산업기사 자력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기능사 자력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 율 적용 : 환경측정 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 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 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 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 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 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 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 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설계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방재안전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훈자력법에 따른 자력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력증
방재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전자통신기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비 고 : 1. 폐지된 자력증으로서 국가기술훈자력법령 등에 따라 그 자력이 계속 인정되는 자력증은 가산대상 자력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력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농촌지도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화 공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화 학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산업경영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물 리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 물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농촌지도	농 업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농업연구	원 예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농촌지도	원 예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업환경	<p>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p> <p>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p> <p>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p>	
	산업곤충	<p>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p>	
농촌지도	잡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생명유전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종자, 식품</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p>기술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p> <p>기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p>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편제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 공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조 경	<p>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p>기술사 : 축산</p> <p>기사 : 축산</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수산자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생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환경연구	환경	<p>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시설연구	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재난 관리	<p>기사 : 방재</p>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데 이 터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 업 기 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 업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 업 기 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 업 기 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 업 기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 업 기 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 업 기 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 업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 업 기 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벚꽃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 업 기 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 업 기 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 업 기 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 업 기 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 업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 업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 업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 업 기 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 업 기 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산업기사 :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사 :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항 공	일반항공	<p>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p>기 사 : 항공</p>
	정 비	<p>산업기사 : 항공</p>
시 설	도시계획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지적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측지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설계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송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공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자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업	축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인공수정사		
수위	수위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물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물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물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건	보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입상병리사(12) 입상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3) 임상심리사(5) 임상심리사1급(7)	입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3)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입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1) 임상심리사2급(3)	입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입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무	치과 의사(2)					
약무	약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호	간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기관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기관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기관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건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자인	건축사(5)	건축사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3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렬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3]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1항관련)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 식, 양식, 복어)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1]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제28조의2제2호 관련)

1.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부여 요건	가산점
해당계급에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 최초 근무한 날부터 1개월마다 을지 0.018점 가산점 부여 (최대 0.75점)

2. 인사교류로 근무한 경력

○ 가산점 부여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일부터 적용
- 인사교류 가산점은 최대 2.4점까지 부여

부여 요건	가산점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

3. 전문직위로 근무한 경력

○ 가산점 부여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 전문직위 가산점은 최대 2.4점까지 부여

부여 요건	가산점
•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
•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2점
•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5점

4.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 가산점 부여 기준

- 아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3점 부여(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제외)
- 특정업무 가산점은 최대 0.75점까지 부여

업무 분야	부여 요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안전관리팀, 재난방재팀 근무 시 ※ 팀별 업무 분장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사람(6급 이하)만 가산점 부여

실적가산점(제28조의2제3호 관련)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산 정 방 법
1.중앙 및 도단위 평가	○ 중앙 단위 평가 등을 통해 기관표창 수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1.0점 0.8점 0.6점	○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중앙 및 도 단위 시책평가 등을 통해 기관수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담당 과장급 1명, 담당주사 1명, 담당자 1명만 적용 ○ 기관수상과 동시 개인표창을 받았을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점 ○ 평가기간 동안 해당부서 근무기간 비율만큼 가점 인정 예)중앙단위 최우수 관련 9월 근무 시 - 점수 : 1.0점× (9월/12월) = 0.75점
	○ 도 단위 평가 등을 통해 기관표창 수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0.5점 0.3점 0.2점	
2.새로운 업무발굴 및 대형 이벤트 사업 추진	○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	0.3점	○ 새로운 업무 또는 시책개발 시행 및 전국단위 이상 이벤트사업 추진 관련 객관적인 성과 거양자 중 - 핵심기여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차상급자 또는 보조자 등은 배점의 1/2을 인정
	○ 전국단위이상 이벤트사업 성과 거양	0.2점	
3.업무관련 창안	○ 정부·도 제안규정에 의거 업무관련 제안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려상 - 노력상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 창안과 관련하여 채택된 안건 중 -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차상급자 또는 보조자 등은 배점의 1/2만 인정 ○ 2개 이상 중복시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 시 계획에 의한 제안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0.5점 0.3점 0.2점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산 정 방 법
4.저서출판 등관련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서·편저 출판 또는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서 출판 - 편저 출판 - 전문학술지(학회지) 논문 게재 	0.5점 0.3점 0.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직무와 관련된 저서·편저출판 및 국내·외 각급 학회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터넷포함) 게재 논문만 인정하되, 학위논문은 제외 ○ 저서 및 편저는 통상 책으로서 인정될만한 내용·분량 등을 의미하며, 편람류 등은 제외 ○ 공저의 경우는 3인만 가점을 부여하되 대표 집필자 1인은 만점을 부여하고 그 외 차등하여 2인까지 배점의 1/2, 3인은 배점의 1/3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집필자, 핵심기여자 등 기여도가 높은 순으로 순번을 지정 제출 ○ 관련 업무분야 연구로 박사학위 소지자 ○ 2개 이상 중복시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 소지 	0.5점	
5.각종 대회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대회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상 - 우수 상 - 장 려 상 	0.3점 0.2점 0.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공인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경진대회,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 거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공무원교육중 과제발표는 제외 ○ 개인표창과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1개만 적용
6.예산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예산절감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억원이상 - 1억이상 3억미만 -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 3천만원이상 5천 만원 미만 - 2천만원이상 3천 만원 미만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기술개발을 통한 절감에만 적용하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선정된 경우에만 함 ○ 창안과 관련될 시 본인에게 유리한1개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여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차상급자 또는 보조자 등은 배점의1/2만 인정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산 정 방 법
7.업무 유공 개인 포상	○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개인표창 수상 - 훈·포장 - 대통령 - 총 리 - 장관·도지사 - 시 장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개인이 받은 포상만 인정하되, ○ 2개 이상 중복시는 본인이 유리한 1개만 적용.
8. 사천시 공무원 으뜸상	○ 「사천시 공무원으뜸상」 수상	0.2점	○ 사천시공무원 자체 최고상임을 고려, 업무유공 개인 포상과 별도 가점 부여
9.정보화 능력	○ 공인된 기관의 정보화 능력 평가 합격자	0.15점	○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평가에 한하여 가점부여 - 유효기간(4년) 범위 내의 것으로 현 직급에 한하여 인정
10.격무부서	○ 격무부서 근무자	최대 1.0점	○ 격무부서로 지정된 부서에서 평정 시 근무경력 1개월마다 0.05점 가점 부여(최고점 1.0)
11.국·도비 예산 확보	○ 배점 - 150억원 이상 1.5점 - 100억~150억 원 미만 1.3점 - 50억~100억 원 미만 1.1점 - 30억~50억 원 미만 0.9점 - 10억~30억 원 미만 0.7점 - 5억~10억 원 미만 0.5점 - 1억~5억 원 미만 0.3점 - 5천만 ~ 1억 원 미만 0.1점		○ 대상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균특회계 시도자율 편성사업, 공모사업(중앙부처, 경남도) ※ 제외사업: 지방교부세 사업, 조정교부금 사업, 균특회계 시군구자율편성사업 법령 등에 의해 정례적으로 신청·선정되는 사업, 신청에 따라 배분형식으로 지원되는 사업, 단순 취합제출, 사업계획서 신청 사업 등 ○ 가점대상: 담당자는 배점의 만점, 담당부서장 및 담당팀장은 배점의 1/2을 인정 ○ 금액기준: 총사업비 중 국·도비 합산 금액 ○ 대상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건별 합산 금액 적용 ○ 공모사업 대상 사업은 합산금액 배점에서 건당 0.05점 가산 ○ 실적가점은 최대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시비부담률이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할 경우 합산금액별 배점에서 0.05점 감점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산 정 방 법
12.규제개혁 발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경남도 규제개혁 발굴·개선에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도지사상 ○ 시 계획에 따른 규제개혁 발굴·개선에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1.5 1.3 1.2 1.0 0.5 0.3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사례제안 및 발굴실적 우수자 등 유공 공무원 ○ 정부 주관 규제개혁 기관표창을 받은 경우에 평가부서(공보감사담당관)로부터 기여자로 통보받은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개선자 : 만점 - 차상급자 또는 보조자 : 만점의 1/2 - 2개 이상 중복 : 유리한 1개를 적용
13.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째 -셋째 -넷째이상 ○ 다자녀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셋째 -넷째이상 	0.2 0.3 0.5 0.3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후 첫 근무평정 시 반영(1회) ○ 출산 당사자에 한함 ○ 막내가 만13세 이하에 한함 ○ 부부 중 1인에 한함(대상자 변경 불가) ○ 중복시 배점이 높은 1개만 적용
14.적극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우수 -우수 -장려 	0.5 0.3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15.파견(인사교류)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교류(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단, 협의회 등)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최대 2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마다 0.1점 가점 부여(최대 2.4점까지 부여) ○ 1년을 초과한 교류 실적에 한해서만 적용하되, 파견기관을 달리하여 연속해서 1년 초과 근무시에는 가점 부여
16.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특히 가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0.1점 ~ 0.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상 가점 부여가 특히 필요한경우 자체 계획 수립(시장 결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등 - 가점은 별도 수립 추진

(비 고)

※ 별표22 실적 가산점 중 10. 격무부서 가점과 별표21 근무경력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표 21 근무경력 가산점만 적용함

※ 실적가산점은 최대3점의 범위내에서 부여함

※ 동일 사업 및 업무 등으로 2개 이상 가산점 항목에 해당이 될 경우 대상자에게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p>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 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u></p> <p>1. <u>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는 과오납한 금액</u></p> <p>2. <u>시험실시 기관의 귀책사유로 시 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 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u></p> <p>3. <u>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 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u></p> <p>③ (생 략)</p> <p>제13조(시험위원) ① ~ ③ (생 략)</p> <p>④ <u>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 척, 근무경험 관계, <u>사제지간</u>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u>안내하고</u>, 시험위원 서 약서에 <u>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u> 한 다.</u></p>	<p>제7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 조제2항 각 호의 -----</u> <u>- 경우 시험실시기관-----</u> <u>응시수수료의 -----</u> <u>-----.</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 사제지간 등)</u> <u>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 서의 소속 공무원 --- 안내하며--</u> <u>-.</u></p>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
격) ① ~ ⑨ (생략)
<신설>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 ①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
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
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
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
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
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
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
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
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
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
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
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
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
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
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
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와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신 · 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6]</p> <p>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7조제2항관련)</p> <p>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적 령</th> <th>적 류</th> <th>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th> <th>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행 정</td> <td>일반행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변 호 사 변 리 사</td> </tr> <tr> <td>법무행정</td> <td></td> <td></td> </tr> <tr> <td>재 경</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td> </tr> <tr> <td>국제통상</td> <td></td> <td></td> </tr> <tr> <td>노 동</td> <td>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td> <td>변 호 사 공인노무사</td> </tr> <tr> <td>문화홍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변 호 사</td> </tr> <tr> <td>간 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td> </tr> <tr> <td>기업행정</td> <td></td> <td>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td> </tr> <tr> <td>세 무</td> <td>지방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td> </tr> <tr> <td>교육행정</td> <td>교육행정</td> <td></td> <td>변 호 사</td> </tr> <tr> <td>사외복지</td> <td>사외복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변 호 사</td> </tr> <tr> <td rowspan="2">공 업</td> <td>일반기계</td> <td>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원도차림, 자립,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원도차림,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권금제련,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원도차림,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 (기계분야)</td> <td></td> </tr> <tr> <td>농업기계</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적 령	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간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방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외복지	사외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원도차림, 자립,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원도차림,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권금제련,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원도차림,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 (기계분야)		농업기계			⋮	⋮			<p>[별표 6]</p> <p>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7조제2항관련)</p> <p>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적 령</th> <th>적 류</th> <th>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th> <th>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행 정</td> <td>일반행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변 호 사 변 리 사</td> </tr> <tr> <td>법무행정</td> <td></td> <td></td> </tr> <tr> <td>재 경</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td> </tr> <tr> <td>국제통상</td> <td></td> <td></td> </tr> <tr> <td>노 동</td> <td>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td> <td>변 호 사 공인노무사</td> </tr> <tr> <td>문화홍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변 호 사</td> </tr> <tr> <td>간 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td> </tr> <tr> <td>기업행정</td> <td></td> <td>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td> </tr> <tr> <td>세 무</td> <td>지방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td> </tr> <tr> <td>교육행정</td> <td>교육행정</td> <td></td> <td>변 호 사</td> </tr> <tr> <td>사외복지</td> <td>사외복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변 호 사</td> </tr> <tr> <td rowspan="2">관 련</td> <td>전 산</td> <td>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제전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제전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td> <td>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멀티미디어그래픽 제작전문가</td> </tr> <tr> <td>데이터</td> <td>산업기사 : 전자제전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시 능 사 :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전자제전기</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적 령	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간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방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외복지	사외복지	-	변 호 사	관 련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제전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제전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멀티미디어그래픽 제작전문가	데이터	산업기사 : 전자제전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시 능 사 :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전자제전기		⋮	⋮		
적 령	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간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방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외복지	사외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원도차림, 자립,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원도차림,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권금제련,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원도차림,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 (기계분야)																																																																																																							
	농업기계																																																																																																								
⋮	⋮																																																																																																								
적 령	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간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방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외복지	사외복지	-	변 호 사																																																																																																						
관 련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제전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제전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멀티미디어그래픽 제작전문가																																																																																																						
	데이터	산업기사 : 전자제전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시 능 사 :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전자제전기																																																																																																							
⋮	⋮																																																																																																								

[별표 8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 기능분야 자격증

직 령	직 류	대 상 자 기 증
편 산	편 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제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제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신업기사 : 전자제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데이터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원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원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관급제련,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원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배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신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원도차량, 원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농업기계 기능사 : 컴퓨터응용설비, 열사, 컴퓨터응용설비,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건설응용기계제도, 공유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원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회강치운전, 레노알미 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영어, 관급제련, 농기계 영어, 농기계운전, 배관, 등기계영어, 열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안전	기술사 : 기계, 원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원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관급제련,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원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배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신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원도차량, 원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배도장비정비, 차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관급제련,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 컴퓨터응용설비, 열사, 컴퓨터응용설비,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건설응용기계제도, 공유설, 원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 수리, 건설기계정비, 기계기운전, 금속기운전, 원도차량, 관급제 련운전, 토터운전, 클리운전, 모터그래이더운전, 아스팔트포니셔 운전, 지게차운전, 양회강치운전, 배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 수용접, 금형, 기계영어, 관급제련, 농기계영어, 농기계운전
	기계운전	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신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 건설응용조선제도, 신채킷조, 등기계영어
일반전기	기술사 : 방송배선,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원도선화, 전기원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원도선화, 전기원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신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원도선화, 전기원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 전기, 원도선화, 승강기	

⋮

[별표 8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 기능분야 자격증

직 령	직 류	대 상 자 기 증
편 산	편 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제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제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비데이터분석 신업기사 : 전자제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전자제산기
	데이터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원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원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관급제련,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원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배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신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원도차량, 원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배도장비정비, 차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관급제련, 농기계, 배관, 산업안 전, 품질경영, 열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기계안전	기술사 : 기계, 원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원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관급제련,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원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배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신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원도차량, 원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배도장비정비, 차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관급제련,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 컴퓨터응용설비, 열사, 컴퓨터응용설비,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건설응용기계제도, 공유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원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회강치운전, 레노알미 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영어, 관급제련, 농기계 영어, 농기계운전, 배관, 등기계영어, 열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 기계, 원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원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관급제련,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원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배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신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원도차량, 원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배도장비정비, 차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관급제련,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 컴퓨터응용설비, 열사, 컴퓨터응용설비,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건설응용기계제도, 공유설, 원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 리, 건설기계정비, 기계기운전, 금속기운전, 원도차량, 관급제 련운전, 토터운전, 클리운전, 모터그래이더운전, 아스팔트포니셔 운전, 지게차운전, 양회강치운전, 배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 수용접, 금형, 기계영어, 관급제련, 농기계영어, 농기계운전

⋮

[별표 13] <개정 2020.12.31.>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9조제1항관련)

직원	계급	직류	5급이상		
			5급이상	67급	89급
사외특직	사외특직	사외특직사 1급	사외특직사 2급	사외특직사 3급	
권 신	권 신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일반기계,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제어기기 제어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일반기계,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제어기기 제어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일반기계,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제어기기 제어응용, 정보보안)	
		내 이 터		신입 기사(전자제어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관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시	사 시	12급 정자서	12급 정자서, 준사서	12급 정자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수의사	
의 두	의 두	일반의사	의사, 한의사	의사, 한의사	
		제 두	제과외사	제과외사	
학 부	학 부	학사, 한외사, 한외사	학사, 한외사, 한외사	학사, 한외사, 한외사	
		학 부	학사, 한외사, 한외사	학사, 한외사, 한외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원호	보건원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신입 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표표지) 신입 기사(조선, 항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신박기판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신입 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신박기판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신입 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별표 13]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9조제1항관련)

직원	계급	직류	5급이상		
			5급이상	6·7급	8·9급
사외특직	사외특직	사외특직사 1급	사외특직사 2급	사외특직사 3급	
사 시	사 시	1·2급 정자서	1·2급 정자서, 준사서	1·2급 정자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수의사	
의 두	의 두	일반의사	의사, 한외사	의사, 한외사	
		제 두	제과외사	제과외사	
학 부	학 부	학사, 한외사, 한외사	학사, 한외사, 한외사	학사, 한외사, 한외사	
		학 부	학사, 한외사, 한외사	학사, 한외사, 한외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원호	보건원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신입 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신입 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표표지) 신입 기사(조선, 항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표표지) 신입 기사(조선, 항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신박기판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신입 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신박기판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선입기제원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신입 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원	계급	직류	5급이상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판, 항공기계)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판사, 항공교통관리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정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판, 항공기계)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판사, 항공교통관리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정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판, 항공기계) 기사(항공) 신입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판사, 항공교통관리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정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판, 항공기계)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정정비사, 항공기판사	기술사(항공기판, 항공기계)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정정비사, 항공기판사	기술사(항공기판, 항공기계) 기사(항공) 신입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정정비사, 항공기판사
시 설	시 설	기술사(직적) 기사(직적)	기술사(직적) 기사(직적)	기술사(직적) 기사(직적) 신입 기사(직적)	
의 표 기 술	의 표 기 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인강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인강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인강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위생사	위생사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사 역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신입기사(현역, 중직, 일시, 양식, 복어)	
간 호 조 두	간 호 조 두	간호조두사	간호조두사	간호조두사	
운 권	운 권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중형) 제2종운전면허(중형)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중형) 제2종운전면허(중형)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중형) 제2종운전면허(중형)	

직원	계급	직류	5급이상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판, 항공기계)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판사, 항공교통관리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정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판, 항공기계) 기사(항공) 신입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판사, 항공교통관리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정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판, 항공기계) 기사(항공) 신입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판, 항공기계)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정정비사, 항공기판사	기술사(항공기판, 항공기계) 기사(항공) 신입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정정비사, 항공기판사	기술사(항공기판, 항공기계) 기사(항공) 신입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정정비사, 항공기판사
시 설	시 설	기술사(직적) 기사(직적)	기술사(직적) 기사(직적)	기술사(직적) 기사(직적) 신입 기사(직적)	
의 표 기 술	의 표 기 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인강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인강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인강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위생사	위생사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사 역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신입기사(현역, 중직, 일시, 양식, 복어)	
간 호 조 두	간 호 조 두	간호조두사	간호조두사	간호조두사	
운 권	운 권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중형) 제2종운전면허(중형)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중형) 제2종운전면허(중형)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중형) 제2종운전면허(중형)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된다. <신설 2006.2.15.>
 2. 운전면허의 경우 시험실시기간의 장이 업무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된다. <신설 2006.2.15.>
 2. 운전면허의 경우 시험실시기간의 장이 업무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1] <신설 2020.12.31.>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제28조의2제2호 관련)

1. 도시·비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부여 요건	가산점
해당계급에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 최초 근무한 날부터 1개월마다 을지 0.018점 가산점 부여 (최대 0.75점)

[별표 21]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제28조의2제2호 관련)

1. 도시·비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부여 요건	가산점
해당계급에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 최초 근무한 날부터 1개월마다 을지 0.018점 가산점 부여 (최대 0.75점)

2. 인사교류로 근무한 경력

○ 가산점 부여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일부부터 적용
- 인사교류 가산점은 최대 2.4점까지 부여

부여 요건	가산점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

3. 전문직위로 근무한 경력

○ 가산점 부여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정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 전문직위 가산점은 최대 2.4점까지 부여

부여 요건	가산점
• 8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
•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2점
•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5점

4.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 가산점 부여 기준

- 아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속된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3점 부여(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제외)
- 특정업무 가산점은 최대 0.75점까지 부여

업무 분야	부여 요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개인안전과 재난행정팀, 안전관리팀, 재난방재팀 근무 시 혹 일반 업무 분장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사람(5급 이하)만 가산점 부여

[별표 22]

실적기산점(제28조의2제3호 관련)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산 정 방 법
1.중앙 및 도단위 평가	○ 중앙 단위 평가 등을 통해 기관표창 수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10점 08점 06점	○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중앙 및 도 단위 시책평가 등을 통해 기관수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담당 과장급 1명, 담당주사 1명, 담당사 1명만 적용 ○ 기관수상과 동시 개인표창을 받았을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점 ○ 평가기간 동안 해당부서 근무기간 비유만큼 가점 인정 예) 중앙단위 최우수 관련 9월 근무시 - 점수 : 10점 × (9월/12월) = 06점
	○ 도 단위 평가 등을 통해 기관표창 수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05점 03점 02점	
2.새로운 업무발굴 및 대형 이벤트 사업 추진	○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	03점	○ 새로운 업무 또는 시책개발 시행 및 전국단위 이상 이벤트사업 추진 관련 객관적인 성과 거양지 중 - 핵심거여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차상급자 또는 보조자 등은 배점의 1/2을 인정
	○ 전국단위 이상 이벤트사업 성과 거양	02점	
3.업무관련 방안	○ 정부·도 제인규정에 의거 업무관련 제안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려상 - 노력상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 방안과 관련하여 채택된 안건 중 - 채택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차상급자 또는 보조자 등은 배점의 1/2을 인정 ○ 2개 이상 중복시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 시 계획에 의한 제안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05점 03점 02점	

[별표 22]

실적기산점(제28조의2제3호 관련)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산 정 방 법
1.중앙 및 도단위 평가	○ 중앙 단위 평가 등을 통해 기관표창 수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10점 08점 06점	○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중앙 및 도 단위 시책평가 등을 통해 기관수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담당 과장급 1명, 담당주사 1명, 담당사 1명만 적용 ○ 기관수상과 동시 개인표창을 받았을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점 ○ 평가기간 동안 해당부서 근무기간 비유만큼 가점 인정 예) 중앙단위 최우수 관련 9월 근무 시 - 점수 : 10점 × (9월/12월) = 075점
	○ 도 단위 평가 등을 통해 기관표창 수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05점 03점 02점	
2.새로운 업무발굴 및 대형 이벤트 사업 추진	○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	03점	○ 새로운 업무 또는 시책개발 시행 및 전국단위 이상 이벤트사업 추진 관련 객관적인 성과 거양지 중 - 핵심거여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차상급자 또는 보조자 등은 배점의 1/2을 인정
	○ 전국단위 이상 이벤트사업 성과 거양	02점	
3.업무관련 방안	○ 정부·도 제인규정에 의거 업무관련 제안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려상 - 노력상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 방안과 관련하여 채택된 안건 중 - 채택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차상급자 또는 보조자 등은 배점의 1/2을 인정 ○ 2개 이상 중복시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 시 계획에 의한 제안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05점 03점 02점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산 정 방 법
7.업무 유공 개인 포상	○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개인포상 수상 - 훈포장 - 대통령 - 총 리 - 장관·도지사 - 시 장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개인이 받은 포상만 인정하며, ○ 2개 이상 중복시는 본인이 유리한 1개만 적용.
8. 사천시 공무원 오름상	○ 「사천시 공무원오름상」 수상	0.2점	○ 사천시공무원 자체 최고성임을 고려, 업무유공 개인 포상과 별도 가점 부여
9.정보화 능력	○ 공인된 기관의 정보화 능력 평가 합격자	0.15점	○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평가에 한하여 가점부여 - 유효기간(4년) 범위 내의 것으로 원 직급에 한하여 인정
10.계무부서	○ 계무부서 근무자	1.0점	○ 계무부서로 지정된 부서에서 평정 시 근무경력 1개월마다 0.05점 가점 부여(최고점 1.0)
11.국·도비 예산 확보	○ 배점 - 150억원 이상 - 100억~150억 원 미만 - 50억~100억 원 미만 - 30억~50억 원 미만 - 10억~30억 원 미만 - 5억~10억 원 미만 - 1억~5억 원 미만 - 5천만 ~ 1억 원 미만	1.5점 1.3점 1.1점 0.9점 0.7점 0.5점 0.3점 0.1점	○ 대상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군특회계 시도차용 편성사업, 공모사업(중앙부처, 경남도) ※ 제외사업: 지방교부세 사업, 조정교부금 사업, 군특회계 시군구차용편성사업, 법령 등에 의해 정례적으로 선정·선정되는 사업, 신청에 따라 배분제식으로 지원되는 사업, 단순 취합제출, 사업계획서 신청 사업 등 ○ 가점대상: 담당자는 배점의 반점, 담당부서장 및 담당팀장은 배점의 1/2을 인정 ○ 금액기준 총사업비 중 국·도비 합산 금액 ○ 대상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건별 합산 금액 적용 ○ 공모사업 대상 사업은 합산금액 배점에서 건당 0.05점 가산 ○ 실적기준은 최대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시비부담률이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할 경우 합산금액별 배점에서 0.05점 감점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산 정 방 법
7.업무 유공 개인 포상	○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개인포상 수상 - 훈포장 - 대통령 - 총 리 - 장관·도지사 - 시 장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개인이 받은 포상만 인정하며, ○ 2개 이상 중복시는 본인이 유리한 1개만 적용.
8. 사천시 공무원 오름상	○ 「사천시 공무원오름상」 수상	0.2점	○ 사천시공무원 자체 최고성임을 고려, 업무유공 개인 포상과 별도 가점 부여
9.정보화 능력	○ 공인된 기관의 정보화 능력 평가 합격자	0.15점	○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평가에 한하여 가점부여 - 유효기간(4년) 범위 내의 것으로 원 직급에 한하여 인정
10.계무부서	○ 계무부서 근무자	최대 1.0점	○ 계무부서로 지정된 부서에서 평정 시 근무경력 1개월마다 0.05점 가점 부여(최고점 1.0)
11.국·도비 예산 확보	○ 배점 - 150억원 이상 - 100억~150억 원 미만 - 50억~100억 원 미만 - 30억~50억 원 미만 - 10억~30억 원 미만 - 5억~10억 원 미만 - 1억~5억 원 미만 - 5천만 ~ 1억 원 미만	1.5점 1.3점 1.1점 0.9점 0.7점 0.5점 0.3점 0.1점	○ 대상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군특회계 시도차용 편성사업, 공모사업(중앙부처, 경남도) ※ 제외사업: 지방교부세 사업, 조정교부금 사업, 군특회계 시군구차용편성사업, 법령 등에 의해 정례적으로 선정·선정되는 사업, 신청에 따라 배분제식으로 지원되는 사업, 단순 취합제출, 사업계획서 신청 사업 등 ○ 가점대상: 담당자는 배점의 반점, 담당부서장 및 담당팀장은 배점의 1/2을 인정 ○ 금액기준 총사업비 중 국·도비 합산 금액 ○ 대상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건별 합산 금액 적용 ○ 공모사업 대상 사업은 합산금액 배점에서 건당 0.05점 가산 ○ 실적기준은 최대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시비부담률이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할 경우 합산금액별 배점에서 0.05점 감점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산 정 방 법
12.규제개혁 발돋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경남도 규제개혁 발돋움 개선에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도지사상 ○ 시 제척에 따른 규제개혁 발돋움 개선에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1.5 1.3 1.2 1.0 0.5 0.3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사례제안 및 발돋움 우수자 등 유공 공무원 ○ 정부 주관 규제개혁 기관표창을 받은 경우에 평가부서(공보감사담당관)로부터 기여도로 통보받은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돋움 개선자 : 만점 - 차상급자 또는 보조자 : 만점의 1/2 - 2개 이상 중복 : 유리한 1개를 적용
13.출산 및 인건관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평가 업무 담당자 	0.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평가 업무담당 및 담당자 ○ 2년을 초과근무한 경우 1개월마다 0.05점 가점 부여(최고점 0.5)
14.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 셋째이상 ○ 다자녀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째 - 넷째이상 	0.2 0.3 0.5 0.3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후 첫 근무평정 시 반영(회) ○ 출산 당사자에 한함 ○ 막내가 만3세 이하에 한함 ○ 부부 중 1인에 한함(대상자 변경 불가) ○ 중복시 배점이 높은 1개만 적용
15.적극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 우수 - 장려 	0.5 0.3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16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특히 가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0.1점 ~ 0.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상 가점 부여가 특히 필요한 경우 자체 계획 수립/시행 결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등 - 가점은 별도 수립 추진

* 동일 사업 및 업무 등으로 2개 이상 가산점 항목에 해당이 될 경우 대상자에게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함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산 정 방 법
12.규제개혁 발돋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경남도 규제개혁 발돋움 개선에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도지사상 ○ 시 제척에 따른 규제개혁 발돋움 개선에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1.5 1.3 1.2 1.0 0.5 0.3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사례제안 및 발돋움 우수자 등 유공 공무원 ○ 정부 주관 규제개혁 기관표창을 받은 경우에 평가부서(공보감사담당관)로부터 기여도로 통보받은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돋움 개선자 : 만점 - 차상급자 또는 보조자 : 만점의 1/2 - 2개 이상 중복 : 유리한 1개를 적용
13.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 셋째 - 넷째이상 ○ 다자녀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째 - 넷째이상 	0.2 0.3 0.5 0.3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후 첫 근무평정 시 반영(회) ○ 출산 당사자에 한함 ○ 막내가 만3세 이하에 한함 ○ 부부 중 1인에 한함(대상자 변경 불가) ○ 중복시 배점이 높은 1개만 적용
14.적극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 우수 - 장려 	0.5 0.3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15.비건인(사교류)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교류(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군단 합(외) 등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최대 2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마다 0.1점 가점 부여(최대 24점까지 부여) ○ 1년을 초과한 교류 실적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파견기관을 단리하여 연속해서 1년 초과 근무시에는 가점 부여
16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특히 가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0.1점 ~ 0.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상 가점 부여가 특히 필요한 경우 자체 계획 수립(시행 결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등 - 가점은 별도 수립 추진

(비 고)

* 별표 22 실적 가산점 중 10. 직무부서 가점과 별표 21 근무경력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표 21 근무경력 가산점만 적용함

* 실적가산점은 최대 3점의 범위내에서 부여함

* 동일 사업 및 업무 등으로 2개 이상 가산점 항목에 해당이 될 경우 대상자에게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함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삭제

③ 삭제

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공고 제2023-1175호

「사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의 편의 도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 범위, 시설기준,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 영업의 신고, 한시적 영업 허용,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보건위생과)

-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

- 전화 : 831- 3616, FAX : 831- 6041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8. .

제출자: 보건위생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의 편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 범위, 시설기준,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영업의 신고, 한시적 영업 허용,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 ~ 2023.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3. “지역행사”란 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 나.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나.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마.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제5조(자격기준)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과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사천시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과 제3조제1항제2호 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영업 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설 운영주체와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 하여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7조(한시적 영업 허용)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건물의 위치 등

-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및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 나.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된 건축물로 분리 또는 구획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다. 건물의 구조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자연환기 등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
- 라.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 가.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도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내수성·내부식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5.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1. 영업장

- 가.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내수성·내부식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 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제2호사목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제8호가목 공통시설기준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공고 제2023-117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 8. 24.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3. 8. 24. ~ 2023. 9. 8.(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229서 9879	그랜저	이*용 김*자	2023. 8. 21.	소유자 자녀 사망 후 재산정리 중 소유자에게 상속이전된 소재불명의 차량 발견.

4. 공 고 내 용

-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공고 제2023-1179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나.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체계적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재해 상황 등을 대비한 용자 완화 조건을 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3. 주요내용

①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제2항)
- 나. 위원회 기능 및 운영규정 신설(안 제12조의 2, 제12조의 3)
- 다. 용자조건 완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제3항)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②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 용자기한 신설(안 제6조의2)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

[(우)5253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우주항공과)

전화번호: 055)831-3056, 팩스번호: 055)831-6044]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제2항)
- 나. 위원회 기능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 다. 용자조건 완화 규정 신설(안 제16조제3항)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중소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24. ~ 2023. 9. 13.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에”를 “사천시에”로 한다.

제2조 중 “시에”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출납) 특별회계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1조 중 “사천시에”를 “시에”로 한다.

제1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제12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용자대상자 및 금액 심의
3. 그 밖에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기간, 용자한도액 상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에 따라 <u>시에</u>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사천시</u> <u>에</u> ----- ----- ----- ----- -----.</p>
<p>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u>시에</u>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 ----- ----- <u>사천시(이하 “시”라 한다)</u> <u>에</u> -----.</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은 <u>시장</u>이 운용·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p> <p>② ~ ④ (생략)</p> <p>⑤ <u>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u></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 ① -----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u></p>
<p>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p>	<p>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p>

① (생략)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출납) 특별회계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1조(용자대상업체) 제10조에 따른 용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사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생략)

<신설>

① (현행과 같음)

② ----- 2028년-----

제9조(출납) 특별회계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1조(용자대상업체) -----

- 시에 -----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신 설>

제16조(용자조건) ①·② (생 략)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용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사항

2. 용자대상자 및 금액 심의

3. 그 밖에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용자조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기간, 용자한도액 상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p>제18조(용자금의 상환) ① 용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u>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시는 취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2. <u>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제18조(용자금의 상환) ① ----- ----- ----- . <u><단서 삭제></u></p> <p>② (현행과 같음)</p>
--	---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 음부즈만의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융자기한 신설(안 제6조의2)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24. ~ 2023. 9. 1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0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적격여부”를 “용자 적격여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용자기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용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자금 : 3개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음.
2.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 : 3개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용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용자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업체 중에서 <u>적격여부</u>를 검토·심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 후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 ----- ----- <u>용자 적격여부</u>----- ----- ----- -----.</p> <p>제6조의2(용자기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용자를 완료하여야 한다.</p> <p>1. <u>경영안정자금</u> : 3개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음.</p> <p>2. <u>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u> : 3개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음.</p> <p>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용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용자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p> <p><삭 제></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위원</p>	

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용자대상자 및 금액 심의

3. 그 밖에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필요한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삭제